방재관계법규

<2022.4.10.기준 현행법 반영 해설> by 구방재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재난피해의 유형 ·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③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장이 정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신속히 방송을 통해 보도한다.

정답 : ①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 -> 중앙대책본부장
시행령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자체장 -> 중앙대책본부장
시행규칙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④ 재난방송의 보도는 지자체장의 업무가 아니다.
재난방송은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016년 6월부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등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된다. 사실상 모든 상송사업자의 의무인 재난방송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 재정상 · 금융상 ·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위해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후, 중앙대책본부장에 의해 선포된다.

정답 : ②
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아닌 재해구호법상의 내용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연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
(과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횡령사례 발생 이후 금지된 것)
재해구호법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생략> 2. <전략>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4. 5. 6. <생략> ② 삭제 <2012. 10. 22.> ③ 삭제 <2012. 10. 22.>
④ <생략> ⑤ <생략> 1. 2. 3. 4. 5. 6. <생략>
⑥ <생략> 1. 2. 3. 4. 5.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 관할지역x -> 중앙대책본부장은
④ 중앙대책본부장 -> 대통령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원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원요청권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시· 군· 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이다.
②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력· 장비· 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④ 국방부장관이 동의하면 지원 가능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시설 및 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②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③ 급수수단의 확보
④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정답 : ③ 급수수단의 확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실무적으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재난 발생 시 활용한다.>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5.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상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책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①
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국고보조는 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은 재난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원(재난지원금 포함)에 대한 보조이다.

③ 실무적으로 8.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가능하다.(민원방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 7. <생략>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④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관련 내용이 있으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가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략>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 · 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비와 인력의 지정· 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정답 : ③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행정안전부 예규)-행정규칙
7.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은 이 기준 및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침에 따른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난관리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모두 묶은 것은?

㉠ 재난예방조치 실적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① ㉠, ㉡
② ㉠, ㉢
③ ㉡, ㉢
④ ㉠, ㉡, ㉢

④ 전부 다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다.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 운용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제1항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를 제작 ·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 )의 제작 · 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제작 · 활용할 수 있다.

① 침수지도 ② 재해지도
③ 홍수위험지도 ④ 재난지도

②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③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④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지소유자 x -> 실제 경작자
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복구보조금 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지자체장(시장·군수)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④ 우수유출저감시설 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③ 지자체장x -> 행정안전부장관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상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②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④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②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x -> 기능복원보다는 ~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① ㉠㉣ ② ㉡㉣ ③ ㉠㉡㉣ ④ ㉠㉢㉣

③ ㉢은 지역위원회(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이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과 관계법령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②「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③「하천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④「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④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대상이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4.「하천법」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30.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②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응급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10일 -> 15일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급경사지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택지 · 도로 ·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① ㉠㉡㉢ ② ㉠㉡㉣ ③ ㉠㉢㉣ ④ ㉠㉡㉢㉣

③ ㉡ 10미터 x -> **20미터**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초고층 건축물 등의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시 재난· 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 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② 유해 · 위험물질 반출 · 반입 관리
③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④ 방범 · 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③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 · 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대응체제
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 재난 · 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나. 유해 · 위험물질 반출 · 반입 관리
다. 소방 시설 · 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라. 방범 · 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속한 법인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② 300만원x -> 500만원 이하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 )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① 2월 말일 ② 4월 30일
③ 6월 30일 ④ 12월 31일

④ 수립은 12월 31일까지 제출은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1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난관리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경감활동 조직 · 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②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③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x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통제·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0. 3. 31.>
④ 삭제 <2010. 3. 31.>

20. 「풍수해보험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는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x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ㅎ나다.
제25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3(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의 대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과거 방재안전직 실무경력과 전공자로서 해설을 만들어 봤습니다.
2022년 4월 10일 기준 현행법령이며 일부 예정조문을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강사가 아니라 해설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법령 문제 외의 이론적인 부분의 출처는 인터넷 검색입니다.

피드백은 공기출 댓글로 받으며 현재는 방재안전직 실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니 현업에 관한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시험공부할 때 공기출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재능기부를 할 생각으로 1주일에 1개 정도의 해설은 올릴 예정입니다.

재난관리론, 재난관계법규를 올려 방재안전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분들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하며 여유가 되면 공무원 강사들이 강의하지 않고 해설도 달지 않는 과목 위주(법규 검색 정도로 해설을 달 수 있는 과목)로 해설을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입니다.